##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014 발의연월일: 2021. 8. 11.

발 의 자: 김주영·박상혁·홍정민

김경협 · 김수흥 · 이용우

이병훈 · 천준호 · 임종성

정일영 • 류호정 • 고용진

박홍근 · 김정호 · 소병훈

송옥주 · 노웅래 · 윤건영

유후덕 · 김영진 의원

(20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행위(이하 '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'라 함)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현행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단속건수 중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,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선한 자 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, 이

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4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	제6조(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
등) ① ~ ④ (생 략)	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
	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
	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34조(벌칙) ①・② (생 략)	제34조(벌칙) ①・② (현행과 같
	슬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
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	
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
에 처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
	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
	<u>자</u>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